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정 인증의 제도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학회 인정 인증의(이하 인증의) 제도는 치과 임플란트학의 발전과 그 치료의 높은 수준 유지 및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인하여 학회 회원에게 공헌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다

제 2조 (신청방법) 인증의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그 자격을 신청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인정 신청서 (학회양식)
2. 이력서 및 연구 업적 목록
3. 본 학회 회원 증명서 (학회양식)

제 3조 (임무) 인증의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임플란트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강의
2. 학회 회원 교육지도 및 평가
3. 회원 자격 인정 필요시의 연수
4. 기타 수련에 필요한 사항

제 4조 (심사위원회) 치과 임플란트학을 교육함에 있어서 충분한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가진 자를 인증의로 선발하여 학회가 인정하고 관장하기 위하여 인증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5조 (심사위원회 사업) 인증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증의 신청자의 심사, 인정 및 등록
2. 인증의 자격상실의 심사
3. 기타 인증의 제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위임사항

제 6조 (심사위원 선출) 인증의 심사위원은 학회의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7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은 인증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그 이하의 조직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9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첫 인증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한 인증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 2조 본 규정은 정기총회를 통과한 날로 효력을 발생한다. (1999년 4월 10일)

제 3조 본 규정은 2005년 평의원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2005년 3월 19일)

인증의 실시 시행세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개정 2006. 04. 16
 개정 2014. 02. 11
 개정 2015. 11. 23

1. 자격 인정 방법

- (1) 학회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비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 ①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5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 가. 증례기록지와 술전, 술후 임상사진 또는 방사선사진 첨부
 - 나. 최종보철물 장착 후 2년 경과 방사선사진 첨부
 - ② 서류심사 합격자는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구술시험은 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3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관장한다.
 - ③ 자격신청 시 심사비 10만원, 자격증 교부로 60만원
 자격갱신 시 자격갱신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2)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인증의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인정료를 징수한다.
- (3) 자격증 발행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2. 자격 인정 기준

- (1)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5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
- (2) 학회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 (3)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 (4) 상기 항 중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최종 결정한다.
 그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한다.

3. 자격 기준

- (1) 학회 인정 점수 **150점** 이상 가진 자로 한다.
- (2) 평점 내용

분 류	내 용	단 위	취 득 점 수
학회 회원 기간	5년 이상	1년당	2점 (최대10점)
치료증례	임플란트 치료 15증례	1증례당	5점 (최대75점)
국내 학회 발표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관련된 내용)	심포지엄 연자	1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	1인 단독	1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종설 및 증례보고		3점

대학 강의	임플란트 관련 강의	1학기당	15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추계 학술대회	1회당	10점
	학술강연회,학술집담회		2점
	연수회	1일당	2점
국제학회 행사 참석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국제대회	1회당	5점

4. 자격 상실

- (1)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 (2)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 (3)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인증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부 칙

- 1)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증의 심사위원회 설치 시행세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1. 심사 위원 기준

- (1) 학회 가입 10년 이상
- (2) 전임 학회장
- (3) 인증의 인정 3년
- (4) 현 집행부의 회장단
- (5) 이사회의 추천자

2. 경과 규정

제1차 인증의가 배출될 때까지 그 심사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전임 학회장 (2)현 회장단 (3)총무, 학술, 연구, 법제, 편집 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들을 인증의로 인정한다.

3. 심사위원 자격 기간

2년으로 한다.

인증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개정 2014. 02. 11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인증으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진료 능력을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인증의 자격을 취득 또는 자격갱신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인증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5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60세 이상인 자,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임플란트 관련학과의 교수(공직치과의사회 가입자). 그리고 중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점수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단 65세 이상인 자는 자격갱신 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영구자격을 부여한다.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당기간만큼 갱신기간을 연장하며 해당자는 인증의 서식 제18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인증의 심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사정을 거쳐 학회장은 인증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기존 인증의 자격증 소지자는 갱신 시까지 현 자격증의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의 서식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자격증 사본
2. 인증의 보수교육 평점기록지
3. 인증의 보수교육 평점이수 증명서
4. 사진(반명함판) 2매

제5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점수인정은 인증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는 자는 인증의 자격이 자동 정지된다. 단 3년 내에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3년 내에 추가 응시하지 않을 시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인증의 자격을 다시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인증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을 재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인증의 자격을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보칙)

1.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증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세칙의 개정은 인증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증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99. 04. 10
개정 2005. 03. 19
개정 2014. 02. 11
개정 2015. 11. 23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정 인증의 제도에 관한 규정 중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인증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수련기관의 인증의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주관) 보수교육은 학회장의 감독 하에 인증의 심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1) 보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 2) 각 교육회기에 20점 이상 필수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교육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2)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증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6조 (보수교육의 종류 및 인정한계) 본 학회 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보수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보수교육은 필수보수교육, 일반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2) 필수보수교육은 인증의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인증의가 되고자하는 자 및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3) 일반보수교육은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연수강좌 및 학술대회로 한다.

제7조 (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 1)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하 "시행기관 및 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2월 말까지 인증의 서식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인증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보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실시 30일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승인된 보수교육 계획은 위원장이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 및 치과전문지에 공고하며 연수강좌 및 실습, 학술대회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회기별 종합교육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일정을 각 수련병원에 배포한다.

제8조 (등록비)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제대금,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보수교육실시 후 시행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인증의 서식 제13호에 의한 보수교육 결과보고서를 교육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 1) 시행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인증의 서식 제14호 보수교육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인증의 서식 제15호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1개월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인증의 서식 제16호의 평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점) 인증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자는 5년 동안 인증의 필수보수교육 10점을 포함한 50점을 득해야 한다.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

1) 필수보수교육

- | | |
|------------|---------|
| 필수보수교육 연자 | 5점 / 1회 |
| 필수보수교육 이수자 | 2점 / 1회 |

2) 일반보수교육

분 류	내 용	단 위	갱신점수
국내 학회 발표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심포지엄 연자	1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	1인 단독	1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중설 및 증례보고		3점
본 학회 행사 참석	춘계,추계 학술대회	1회당	10점
	학술강연회,학술집담회	1일당	2점
	연수회		2점
국제학회 행사 참석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국제대회	1회당	5점

- 3)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으로 국내학회의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한다.
- 4) 인증의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강좌는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보관) 위원회는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경과 조치로 다음과 같이 인증의를 부여한다.

1. 서류 심사에 의한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가. 치과대학 임플란트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 교육자
 - 나.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의 임플란트 관련학 전임 교육자
 - 다. 가, 나 항에 해당하는 경력 소지자로 과거 5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 라. 본 학회에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학회 활동을 한 회원
- 2. 구두시험으로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가. 치과임플란트 관련학 전공의 수련과정 2년 이수자 ;
필수보수교육 10점 (단, 3년 수련 이수자는 필수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나. 치과임플란트 관련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필수보수교육 10점, 일반보수교육 10점
 - 다. 치과임플란트 관련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보수교육 20점, 일반보수교육 20점
- 3. 임상 증례 및 구두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가. 본 학회 가입 여부, 임상경력에 의한 보수교육시간
 - (1) 본 학회 가입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
일반보수교육 20시간, 필수보수교육 20시간
 - (2) 본 학회 가입 4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일반보수교육 40시간, 필수보수교육 40시간
 - (3) 본 학회 가입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일반보수교육 50시간, 필수보수교육 50시간
 - (4) 본 학회 가입 2년 미만인 자
일반보수교육 60시간, 필수보수교육 60시간
(단, 2001년 2월 이전 졸업자에 한함)
 - 나. 임상증례
가공의치, 국소의치, 총의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임플란트 치료 각 1증례씩
총 3증례를 발표해야 함.
- 4. 본 보칙의 경과 조치는 2010년 2월 28일로 만료한다.

부 칙

-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세칙 시행 이전에 실시된 교육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은 보수교육 점수로 인정한다.
- 제3조**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